

제 6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

주주님의 건승과 맥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

당사는 상법 제365조 및 정관 제20조에 의하여 제67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1. 일 시 : 2024년 3월 21일 (목) 오전 10시

2. 장 소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,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홀

※ 대중교통 이용시 :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 2번 출구로 나와서 하나증권빌딩까지 직진 후 좌회전(도보 5분거리)

기타 문의사항 : 02-2170-5142

3. 회의목적

가. 보고 사항 : 제67기(2023.01.01~2023.12.31) 영업보고, 감사보고,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

나. 부의 안건

1) 제1호 의안 : 제67기(2023.01.01~2023.12.31)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

-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(안) 포함 - 현금배당 보통주 1주당 190원, 우선주 1주당 1,196원

2) 제2호 의안 : 이사 선임 승인 (사내이사 1명)

구 분	성 명	출생년월	임기	주요약력	추천인	회사와의 거래내역	최대주주와의 관계	제남사실 여부	부실기업 경영진 여부	법령상 결격사유 유무
사내이사	정승태	49.09.07	3년	(현) 디엘이앤씨㈜ 경영지원본부 고문 (현) 디엘건설㈜ 경영지원본부 고문 (전) 디엘이앤씨㈜ 준법경영실 실장	이사회	-	최대주주의 미등기임원	-	-	-

3) 제3호 의안 : 상근감사의 비상근감사 전환의 건 (신현창 감사)

구 분	성 명	출생년월	임기	주요약력	추천인	회사와의 거래내역	최대주주와의 관계	제남사실 여부	부실기업 경영진 여부	법령상 결격사유 유무
감 사	신현창	61.08.20	2026년 3월까지	(현) 디엘건설 주식회사 감사 (전) 우리은행 기업영업본부장 (전) 우리에프아이에스 카드서비스본부 상무	이사회	-	-	-	-	-

4) 제4호 의안 : 정관일부 변경의 건 (뒷면 참조)

5) 제5호 의안 :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(20억)

6) 제6호 의안 :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 (2억)

4.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

- 주주님께서 본인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하시거나 대리인에게 위임 또는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.

※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

- 당사는 2021년 2월 25일 이사회에서 「상법」 제 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,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.

-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.

가. 전자투표를 할 인터넷(모바일) 주소 : 「<https://vote.samsungpop.com>」

나. 전자투표 행사 기간 : 2024년 03월 11일 ~ 2024년 03월 20일

다. 본인 인증 방법은 공인인증, 카카오페이, 휴대폰인증을 통한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 행사

라. 수정동의안 처리 :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

5.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

- 직접행사 : 본인신분증

- 대리행사 : 위임장(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, 인감 날인), 인감증명서(또는 주주 본인 신분증 사본), 대리인의 신분증

2024년 2월 28일
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14
디엘건설 주식회사
대표이사 박 유 신

職印
省略

명의개서 대리인 한국에탁결제원 사장 이순호

정관 일부 변경 (안)

변경전 내용	변경후 내용	변경의 목적
<p>제 30 조 (이사의 수)</p> <p>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7명 이내로 하고,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.</p>	<p>제 30 조 (이사의 수)</p> <p>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7명 이내로 한다.</p>	<p>- 사외이사 조항 삭제</p>
<p>제 42 조의 2 (감사의 수와 선임)</p> <p>① 이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 2명 이내로 한다. 그 중 1명 이상은 상근으로 한다.</p>	<p>제 42 조의 2 (감사의 수와 선임)</p> <p>①이 회사의 감사는 1명으로 한다.</p>	<p>- 상근감사 조항 삭제</p>
<p>제 44 조 (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·비치 등)</p> <p>④ (삭제 2022.03.24)</p> <p>⑤ (삭제 2022.03.24)</p> <p>⑥ 대표이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4항에 의한 이사회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.</p>	<p>제 44 조 (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·비치 등)</p> <p>④ (삭제 2022.03.24)</p> <p>⑤ (삭제 2022.03.24)</p> <p>⑥ 대표이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표와 외부 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.</p>	<p>- 조문정비</p>
	<p>부 칙</p> <p>제 1 조 (시행일)</p> <p>이 정관은 제6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4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.</p>	<p>- 정관 시행일 정비</p>